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해양관측업	가. 조석·조류·해류·수질·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나.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해양관측 다. 해양관측 자료 처리·분석 및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라.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한 자료 처리·분석 마.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정보 처리·분석 및 예측
2. 수로측량업	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항로·어항 등에서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나.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다.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라.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수로측량 마. 해안선 조사 등 수로측량 바.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 관측 사. 수로측량 관련 도면(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은 제외한다)의 작성
3. 해도제작업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및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구축·편집·출력
4. 해양정보서비스업	가.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나. 해양정보(해양위성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가공·관리·유통·판매 또는 제공 다. 해양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개발(해양관측업·수로측량업·해도제작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